

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 최종합격자 공고

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29일
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

1. 최종합격자 명단

채용예정분야		직 종	채용인원	합격인원	최종 합격자
금척	사진영상	연구원(가급)	1명	1명	사진영상-1

※ 합격자는 유선상 개별 안내

2. 채용에 필요한 서류

가. 최종합격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2026. 8. 4.(화)까지 신라고분발굴조사단 (경북 경주시 쪽샘길 60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기본증명서(상세) 1부
- 2) 주민등록등·초본 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남성의 경우 군경력 포함) 각 1부
- 3) 결격사유 확인서 1부 [서식 1] 참조
- 4)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정채용 확인서 1부 [서식2] 참조
- 5)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[서식3] 참조
- 6) 일반인 채용신체 검사서 1부(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로 대체가능)
- 7) 통장사본(급여지급용) 1부

3. 기타사항

-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기재 사실이 확인되면 임용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채용담당자(054-622-1720)에게 문의 바랍니다.

- 붙임 1. [서식 1] 결격사유 확인서
2. [서식 2] 국가유산청 공정채용 확인서
3. [서식 3]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
[서식 1]

결격사유 확인서

○ 성 명:

○ 생년월일:

본인은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원 등 근로자로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

임용 후 확인서 내용과 달리 사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26. . .

확인자:

(인)

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

국가유산청 공정채용 확인서

우리 기관은 「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(17.7.20.)」에 따라 기간제·파견·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(무기계약직)을 추진하였습니다.

이후, 「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(18.11.1./고용노동부)」과 「문화재청 공무원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확립 추가 방안(18.11.7.)」에 따라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2017.5.12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, 「국가유산청 공무원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(2024.5.1.)」에 준용하여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1. 본인은 년 월 일 입사자(기간제/파견/용역/신규채용)로, 국가유산청에서는
 년 월 일부터 근무를 시작(또는 시작 예정)하였다.
- 2-1. 본인은 (구직사이트/정부 일자리 연계 채용/지인 소개/친인척 소개/기타 사유)의 경로로 해당기관
(업체)에 취업하였으며, 국가유산청에(기간제/파견/용역/신규채용)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.
- 2-2. 본인은 () 사유로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하였다.

<< 작성예시 >>

- ① 해당지역 거주자로서 접근편의성 ② 평소 관심 있어 하는 분야
③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발표에 따른 전환 희망 ④ 기타사유 등 상기 사유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재

3. 국가유산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()촌 이내의 관계로, ()에 근무 중인 (성명 :)이다.
- 3-1. (3번 답변 응답자만 작성) 친인척 등의 관계가 있는 자가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(생각한다./생각하지 않는다.)

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, 추후 작성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계약해지 등의 관련 절차에 따르겠습니다.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·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2026. . . .

확인자 : (서명/인)

- ☐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 고지
- ① 수집, 이용 목적
- 공공기관 채용경로 조사 및 「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」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, 감사자료 작성
- ② 수집, 이용 항목
- 성명, 소속, 직종, 소속기관 입사일자, 입사방식, 국가유산청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, 성명
- ③ 보유기간 : 재직기간동안 보유

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 번	행정 정보명	연 번	행정 정보명
1	결격사유조회		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☐ 주민등록 ☐ 여권 ☐ 외국인등록 ☐ 운전면허) 번호 :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-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26년 월 일

대상자 본인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 생년월일 :

 전화번호 :